

<보도일시: 2024. 8. 13.(화) 15:30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2024. 8. 1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현황 및 문제점	1
1. 현황	1
2. 문제점	2
II. 추진 대책	3
1. 화재·폭발 예방 및 건설업 안전 인프라 강화	4
2.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강화 및 특화 지원	6
3. 취약 사업장 안전 관리 지원 및 점검 강화 ...	10
4. 안전 문화 확산 및 인프라 확충	12
III. 산업안전보건 전달체계 역량 강화	14
IV. 향후 추진 일정	15

I.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취업

- 15세 이상 우리나라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 이 중 취업자는 92.3만명, 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78.9%)에서 종사*

* (규모별) ① 50인 미만 78.9%, ② 50~299인 18.1%, ③ 300인 이상 3%

단위: 천명	합계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전문인력 (E-1~7)	유학생 (D-2 등)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6)	기타
상주 외국인	1,430	269	87	46	188	386	131	120	203
취업자	923	269	63	46	33	250	98	70	94

※ 법무부·통계청, 「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운 상황

□ 소규모 사업장은 사망사고 다발, 외국인 사고 확률은 내국인 1.4배

- '23년 사고사망자(812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637명으로 78.4%
 - 특히, 건설업(356명)에서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43.8%)을 차지,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244명, 68.5%)에서 다발

구분(명)	소 업종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합계	50인 ↓	50인 ↑	소계	50억 ↓	50억 ↑	소계	50인 ↓	50인 ↑	소계	50인 ↓	50인 ↑
사망자 수 (비중)	812 (100%)	637 (78.4%)	175 (21.6%)	356 (100%)	244 (68.5%)	110 (31.5%)	165 (100%)	128 (77.5%)	37 (22.5%)	111 (100%)	75 (67.5%)	36 (32.5%)

- '23년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 10.5%,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사고 발생 확률은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

* 사고사망만인율('23) : 외국인 근로자 0.53‰(추정), vs 전체 근로자(내·외국인) 0.39‰

- 건설업(55명, 64.7%), 50인 미만 사업장(57명, 67%)이 대부분

2. 문제점

□ 소규모 **부족한 안전 관리** + 외국인 **서툰 한국어로 사고 위험 가중**

- 체계구축·위험성평가 컨설팅, 재정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실제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 한계**
 -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의 문제 제기
-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로 표시된 위험 기계·기구 표시 및 안내 표지판 등을 갖출 여력 부족**
 - 생산 속도·물량을 우선시하는 관행 등으로 기계 작동법 등 기본적인 작업 지시도 없어, 사고 위험에 노출

현장의 목소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위험요인 개선 방법도 모르고 개선 비용도 부담스러움”
 “안전 관련 자료는 한국어로만 게시되어 있고, 위험 기계 안내 표지 등이 없어 다치는 경우 빈번”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사각지대 여전**

- 고용허가제(E-9, H-2)는 국가 주도로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을 받는 반면, 他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은 사업주 의무에 의존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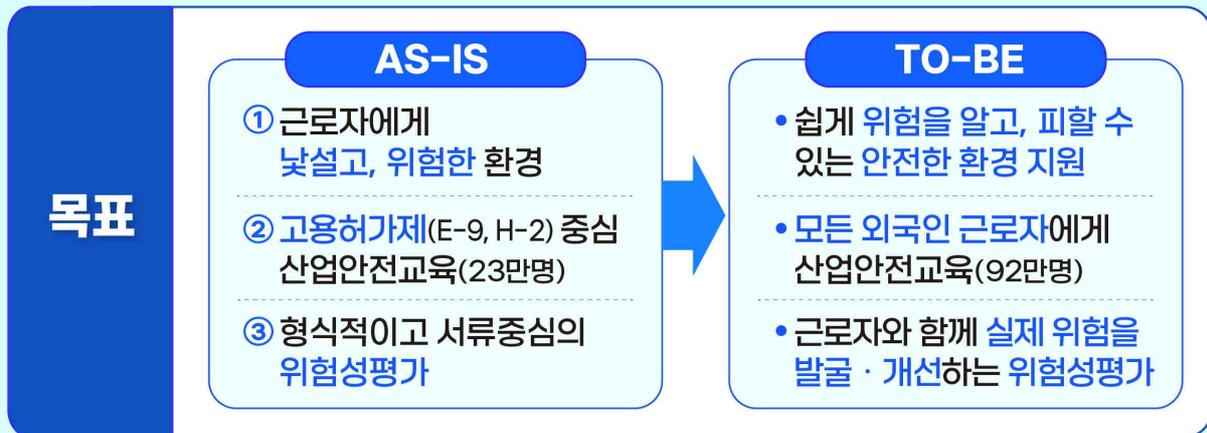
	입국 前(권고)	입국 後(의무)	취업 後(의무)
고용허가제 (E-9, H-2)	1시간 / 45시간	3시간 / 16시간	채용시8시간+반별12시간
他 비자 (F-4 등 기타)	X	X	상동

- 그러나,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주로 영세하여 사업주의 안전 의식 미흡 및 여력 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은 어려움

현장의 목소리

“제대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안전 교육을 수료했다는 서명만 받는 경우도 있음”,
 “교육을 받더라도,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됨에 따라, 이해하기가 어려움”

II. 추진 대책



추진 과제

1. 화재·폭발 예방 및 건설업 안전 인프라 강화

- ① 화재·폭발 예방 설비 지원 확대
- ②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등 안전 인프라 강화
- ③ 스마트 안전 장비 확산 지원

2.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교육 강화 및 특화 지원

- ① 모든 외국인 근로자(92만명)에게 산업안전교육 확대
- ② 찾아가는·체험 중심·업종 특화 산업안전교육
- ③ 쉽게 이해·활용 가능한 콘텐츠(모국어 번역, 그림 등) 확산
- ④ 언어 장벽 해소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취약 사업장 안전 관리 지원 및 점검 강화

- ① 위험요인 발굴-개선-공유 집중 지원·점검으로 위험성평가 효과 제고
- ② 소규모 사업장이 더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 ③ 위험요인 발굴·개선 강화 중심으로 취약사업장 점검 및 지원

4. 안전 문화 확산 및 인프라 확충

- ①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의 안전 의식 제고
- ②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1. 화재·폭발 예방 및 건설업 안전 인프라 강화

❖ 이천 물류창고(38명 死)·화성 화재사고(23명 死) 등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 사고 반복, 건설업은 전체 사고 사망자의 약 절반(43.8%)

① 화재·폭발 예방 설비 지원 확대

- (화재 위험 공정 개선) 비상구 형광 표시·외국인 안전 사인 등 작업장 디자인 개선, 화재 감지·경보 설비도 지원(‘25~, 최대 1억원) <고용·산업부>
- 화재 대비·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 보관시설, 격벽 설치 등 지원



- (소화·대피 설비 지원)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설비 구입 비용 지원(‘24~) <고용부>

(지원 대상 소화 및 경보·대피 설비)

구분	품목
소화설비	▲ 금속화재 소화용 팽창질석, ▲ 금속화재 소화용 마른모래 등
화재 경보 및 대피 설비	▲ 비상경보장치, ▲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 피난대피 유도선, ▲ 화재감시 기능보유 CCTV 등

- (화재 대응 요령 전파·확산) 화재 사고 시 준수해야 하는 행동 요령을 이해하기 쉬운 포스터, 표지* 등으로 제작·배포(‘24.8~) <고용부·소방청>

* 비상구 위치 안내, 위험장소 화기금지·출입금지·금연 등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

- 지방노동관서, 취업 교육기관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함께, 전국의 사업장에 배포 및 부착 지도

②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등 안전 인프라 강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안전관리 비용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반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평균 19% 인상('25~) <고용부>
- 모든 연간 단가공사*에서 총 계약금액(연간 예정 작업 건수 x 건당 단가)이 2천만원 이상이면 계상('25~)

* 작업 건당 단가는 사전에 결정하되, 연간 작업 건수는 미정인 상태로 체결하는 계약

☑ 참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개념]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사에 지급
- ▶ [대상]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 [사용]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안전시설 설치·임대비 등

- (안전관리자 양성)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제도*' 확대 운영(~'25) <고용부>
- * 건축, 토목 중급기술자 등에 건설업 안전관리 교육(84H) → 이수 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120억 미만 현장)
- 분리발주 의무 대상 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는 실무경력을 갖춘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24~, 산안법 시행령)
- * 분야별 중급이상 기술자(예: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등

③ 스마트 안전 장비 확산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에 AI 인체 감지 CCTV 등 스마트 안전 장비 우선 지원('25년) <고용부>
- 스마트 화재 감지 센서(불꽃 등 초기 감지) 및 화학물질 누출 감지 센서 등 필요 품목 지원 적극 홍보
- (구입·임대비 지원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한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임대비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24~) <고용부>
- * 40%(현재) → 70%(25년) → 100%(26년), 총액의 10% 제한 확대도 추후 검토

2.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교육 강화 및 특화 지원

① 모든 외국인 근로자(92만명)에게 산업안전교육 확대

- (<단기> F 계열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산업안전교육 추가('24~) <고용·법무부 등>

비자	추진 내용
모든 비자	·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에 산업안전교육을 포함하고, 교재·강사 지원(고용부)
E-7	·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과 협업, 산업안전교육 개설(고용부, 산업부)
E 계열	· 안전보건교육(이러닝) 과정 개설(고용부) → 비자 발급 시 교육 이수 지도·권고(법무부)
F 계열	·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에 기초 안전교육, 산재보상 안내 등 수록(동포청, 고용부)
D-2 등	· 외국인 유학생 대상(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포함) 산업안전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확산 추진(고용부, 교육부, 산업부)

- (<단기> E-9, H-2)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 내실화('24~) <고용부>
 - 입국 전 송출국에서 진행 중인 산업안전교육 시간 확대(1 → 3시간)
 - 입국 후 산업안전교육시간(3~5시간)을 최소 5시간으로 의무화하고, 교육기관에서 표준화된 과정을 운영토록 커리큘럼·교재 개발·보급
- (<중장기> 모든 비자) 모든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산업안전보건법, '24~) <고용·법무부>
 - 작업장 배치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현장의 목소리

“법에서 의무로 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움”
 “소규모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인력·역량이 부족”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교육에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대피 방법' 필수 포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체류 비자 전환(E-9 → E-7-4) 시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고, 산업안전교육 필수 포함

② 찾아가는 · 체험 중심 · 업종 특화 산업안전교육

- (교육 방식 혁신) 산업안전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체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참여 시 의무 교육(8시간)으로 인정
 - 산업단지공단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등과 협업하여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 운영('25~) <고용산업부>
 - 안전체험교육장(3개)을 주말 개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인 커뮤니티와 연계한 언어별 체험과정* 운영('24년 시범 실시) <고용부>

* 지역별 외국인 커뮤니티가 참여자 모집하여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예정



< VR 체험 교육 >



< 안전대 체험 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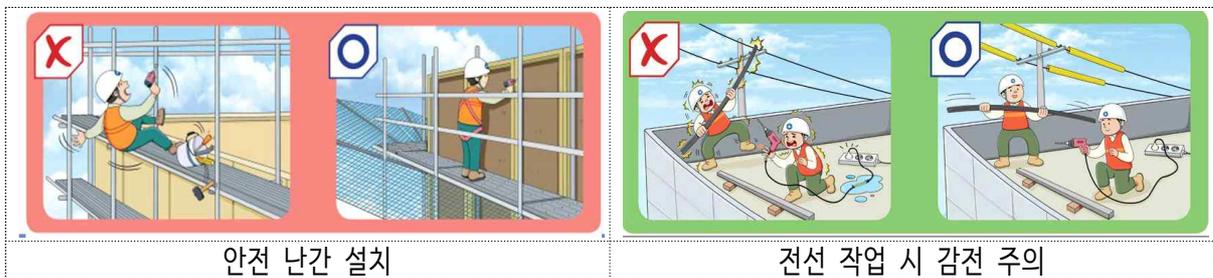
- 공동훈련센터(200개소) 및 훈련 법인(40개)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재직자 등 대상 체험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원('24~) <고용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 국가별 언어(음성 더빙 및 자막) 제작 영상 교육 제공, 안전장비 실습 및 가상현실 체험 교육(VR) 확대('24~)
- (직업훈련과 연계) 조선업 등에 실시 중인 E-9 근로자 특화 직무 훈련(4주 이상, 용접 등 직무훈련) 시 산업안전교육 확대('24~) <고용부>

* 특화 직무 훈련 수료 시 산안법 상 채용 시 교육(8시간)으로 인정

- 훈련 시 안전에 방점을 두고, 산업안전교육 등 비중 확대(30% → 50% 이상)
- 중장기적으로 E-9 '특화훈련'과 입국 후 '취업교육' 일원화 검토('25~)

3 쉽게 이해 · 활용 가능한 콘텐츠(모국어 번역, 그림 등) 확산

- **(외국인 전용 앱)** 업종별 안전보건 수칙, 사망 사고 사례 등을 외국어로 번역·안내하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지킴이 APP’ 보급(11월~) <고용부>
- 외국인 근로자(정기 교육 등) 교육 과정도 App에 탑재하여, 손쉽게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
 - * (예시: 스마트 민방위 교육) 카카오톡 등을 통해 민방위 훈련을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 **(비언어적·모국어 콘텐츠)** VR 체험, 그림(O, X 비교) 등 비언어적 콘텐츠 중심으로 제작·보급하여 외국인 근로자 이해도 제고(24~) <고용부>



안전 난간 설치

전선 작업 시 감전 주의

-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로 제작된 재해예방 사례집, 비상상황 대처법 가이드, 교육 자료 등 제작·보급 확대
- **(현장 밀착형 정보 제공)**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대사관, 외국인 지원센터, 외국인 자체 커뮤니티 등에 안전보건정보 정기 제공(24~) <고용부>
- 송출국 주한 대사관과 연계하여 ‘중대재해 사이렌’ 등 안전보건 자료를 번역하고, 대사관 홈페이지·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공

현장의 목소리

“대사관이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SNS에 올리는 정보는 신뢰성이 높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

- **(전문가 양성)**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 도입, 외국인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추진(25~) <고용부>
- **(쉬운 안전보건 기초교육)**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재외동포 중심으로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 ‘쉬운 안전 기초과정’(이러닝, 2시간) 제공(25~) <고용부, 동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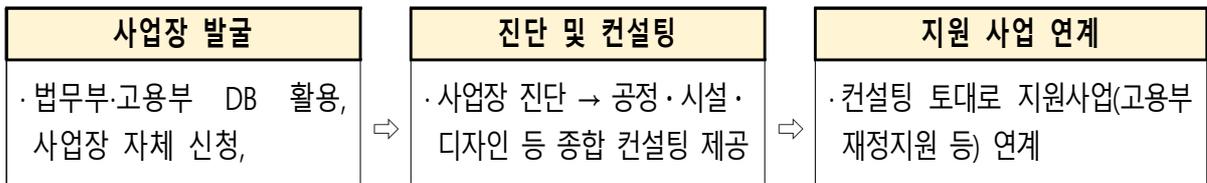
* 재외동포청과 협업, SNS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안내

4 언어 장벽 해소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실시간 번역 지원)** 민간(삼성重 등)에서 개발·활용 중인 건설·조선 현장 용어 번역 앱*을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비용 지원('25~) <고용부>

* ①(건설업) 대화형 인공지능에 건설현장에서 실제 사용용어 학습 → 15개국 언어로 실시간 번역
 ②(조선업) TBM 시 모바일 앱을 통해 9개국 언어로 번역된 작업 지시서 제공

- **(안전 역량 레벨업 지원)** 외국인 다수 고용 영세 사업장을 선별하여 진단부터 시설 개선 및 사업장 디자인 등 원스톱 지원('24~) <고용·법무·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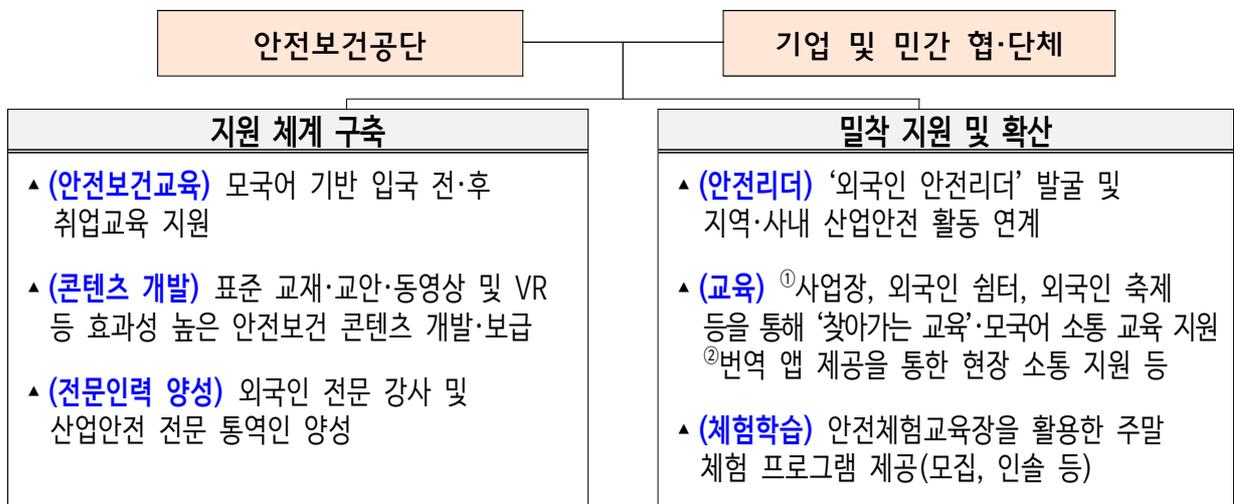


- **(작업 노하우 전수 지원)**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 등을 사내·지역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 산업안전교육·작업 노하우 전수('24~) <고용부>

* (00기업)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안전리더로 지정, 신규 외국인 직원에게 멘토링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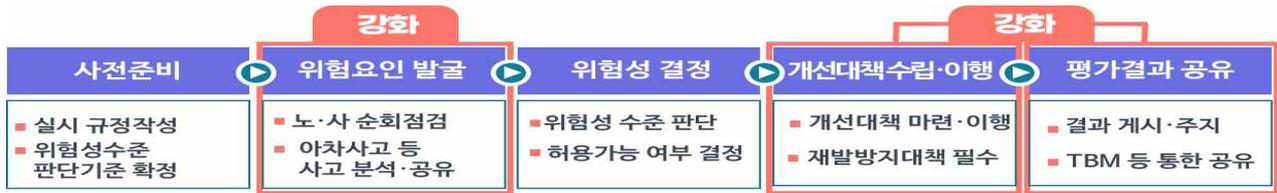
- 안전리더를 안전보건전담자 지정 시 신규 고용허가 선정에서 가점 부여, 우수 안전리더는 숙련기능인력 자격(E-74) 전환 시 우대 등 혜택 <법무·고용부>

- **(업종·지역 특화 지원)** 기업·업종별 협·단체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업종·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산재예방사업 강화('25~) <고용부>



3. 취약 사업장 안전 관리 지원 및 점검 강화

1 위험요인 발굴-개선-공유 집중 지원·점검으로 위험성평가 효과 제고



- (**발굴** 위험요인 파악 지원) '근로자 참여' + '전문가 지원' + '고위험요인 제공'으로 소규모 사업장도 위험요인을 쉽게 찾도록 지원(24.~) <고용부>
 - 아차사고, 설비 외 근로자 특성*(수급인·외국인·일용 등)에 따른 위험요인 등이 반영되도록 근로자 참여 가이드 제작·안내
 - * ▲ (수급인근로자) 도급인사업장의 위험요인 전달·공유 누락 가능성
 - ▲ (외국인근로자) 의사소통 제약, ▲ (일용근로자) 사업장 정보 및 현장 적응 부족
 - 현장 근로자도 놓칠 수 있는 화학·보건 위험요인은 보건전문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업,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지원
 - * 체계구축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 3.65만개소, 기술지도 20.5만개소 등
 - 고위험요인 자료*는 최신화하고 민간 위험성평가 지원 프로그램·앱 등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로 개방
 - * 現) '16~'21년 사고사례 4,432건을 토대로 고위험작업·상황, 위험요인, 감소대책 등 제공
- (**개선** 지도·점검·지원은 개선 확인 집중) 사업장 감독·점검, 민간전문기관* 및 안전공단 컨설팅·지도 시 위험요인 개선 이행 여부 필수 확인(24.~) <고용부>
 -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위험성평가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예규 개정 추진(24.~)
- (**공유** 취약근로자 공유 의무화) 사업주가 외국인·일용·수급인 등 취약근로자에게도 발굴된 위험요인을 공유토록 의무 신설(24.~, 고시 개정) <고용부>
 - * (참여·공유 예시 제공) 외국인 근로자는 ▲ 사업장 평면도에 스티커 부착 등으로 아차사고 신고, ▲ 위험 설비·작업은 그림·사진·색상 등 비언어적 콘텐츠를 활용 안내 등

② 소규모 사업장이 더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 (전산 시스템 개선) 비용 부담 없이 문서 작업을 줄이고, 쉽고 간편하게 관리 가능토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 개선('24.8~) <고용부>
 - 스마트폰으로 아차사고 신고 등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리자가 위험성평가에 반영 후 결과 공유까지 되도록 모바일 웹 구현
- (단계별 동영상 지원) 현장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실행 동영상·서식 등 자료 배포*('24.8~) <고용부>
 - * KRAS 자료실,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자료 공개 및 SNS를 통한 고위험사업장 링크 전송 등
- (사업주담당자 교육)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우수사례 기업 대표 등 현직자 섭외 및 현장 사례·실습 중심 교육 제공('24.~) <고용부>

③ 위험요인 발굴·개선 강화 중심으로 취약사업장 점검 및 지원

- (고위험 즉시 점검·지원) 화재·폭발 우려 업종* 중 최근 3년간 감독·점검을 받지 않은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 우선 점검(~'24) <고용부>
 - * 화재폭발 발생 건수 및 빈도, 유해·위험 물질 취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체계구축 컨설팅 강화) 점검·감독 시 대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취약사업장(자가진단 ●)은 3개월 내 컨설팅 등 제공('24.8~) <고용부>
 - 개선 이행점검 및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도 신설
 - * 컨설팅(5회)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방문, 컨설팅 후 변화, 개선 여부 등 점검
 - 컨설팅 기관 평가(전수 모니터링 등) 시 사업 수행 적정성 평가 비중을 확대(40% → 60%)하고, 저성과 기관은 2년 간 사업 참여 제한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개편) 심사·관리는 엄격히 하되, 재정지원 가점 확대 등 혜택 강화→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 제고('24~) <고용부>
 - 근로자 참여·공유, 실제 위험개선 여부에 대한 심사 항목 강화, 인정 기준도 상향(예: 70 → 90점)
 -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추진, 개선사항 미이행 시 감점 또는 인정취소(중대사항 미이행) 신설

4. 안전 문화 확산 및 인프라 확충

①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의 안전 의식 제고

- (안전문화 실천) 전국 39개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연계, 핵심 안전수칙 4가지를 전파하는 '4대 금지 캠페인' 실시('24~) <고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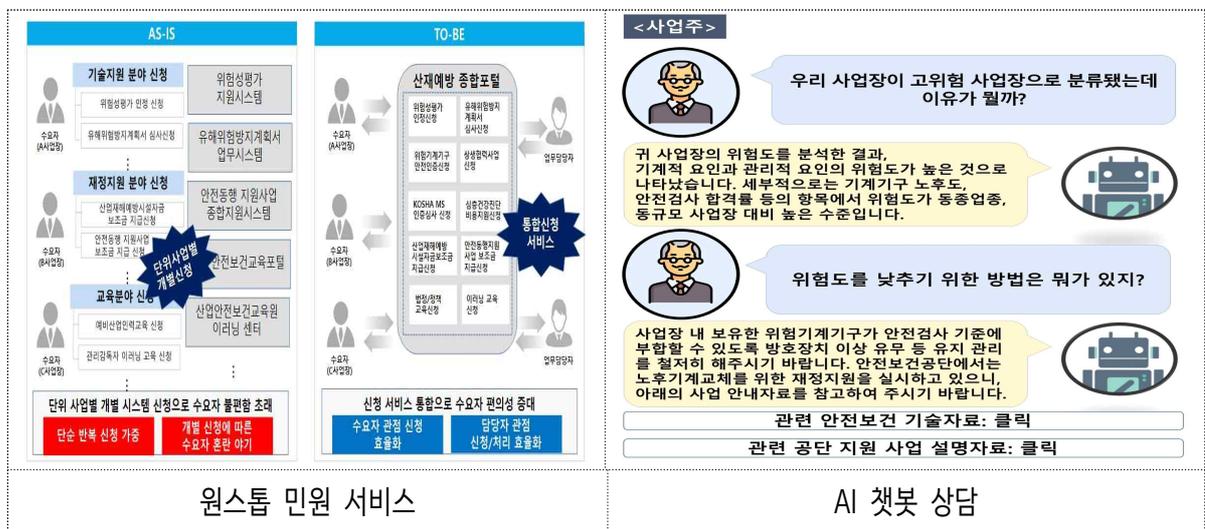
[4대 금지 캠페인]

- ① 안전 장치 해제 금지 ②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 '4대 금지 캠페인' 문구를 스티커·현수막 등의 형태로 제작, 지자체·공공기관 전광판·현수막 게시대 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
- 전국 공중파 라디오를 통해 '4대 금지 캠페인' 송출
- (미디어 홍보) TV*·라디오·전광판 등 일상적인 대국민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24~) <고용부>
 - * 지상파·중편 등 고유매체 외 KBS LIFE(재난 안전 분야 전문채널) 등 안전채널 추가 활용 검토
- (우수 사례 확산) 지역별로 위험성평가·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등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 발굴('24~) <고용부>
 - 우수기업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사례집 발간, 영상 제작·배포 등 지역 내·동종업계에 확산(우수 사례는 산재예방 유공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지역 특화 캠페인) 대사관 행사·지역별 외국인 축제 등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안전 캠페인 활동 전개*('24~) <고용부>
 - * 외국인 참여 안전문화 부스 운영(VR 체험, 안전 OX 퀴즈, 건강검진 등), 안전보건 표지 만들기, 안전보건 포스터 그리기 등 각종 공모전 등
- (SNS 홍보) 외국인 근로자 참여 콘텐츠* 등 수요자 관점의 안전보건 자료 제작,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확산('24~) <고용부>
 -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 등 기본 안전지식

2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 (종합포털 구축) 사업주·근로자가 한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종합포털 구축(24~) <고용부>
 - 민원 신청, 신청 현황 및 결과 확인, 안전보건자료 검색 등을 종합포털에서 원스톱으로 지원
 - 사업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주·근로자에게 산재예방 지원 사업, 가이드 등을 맞춤형으로 추천, AI 챗봇 상담 서비스 도입



- (안전관리 인력 확충) 공학·자연과학 전공자가 산업안전 관련 일정 학점 이상 이수 시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25년~, 산안법 시행령) <고용부>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역할, 업무 및 업무수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 제공(~24)
- (안전문화 수준 진단 지원)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K-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개발·보급(25~) <고용부>
 - 향후 기술지도, 지도·점검 등에도 KSCI를 활용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안전문화 수준 비교를 위한 DB 구축 추진

III. 산업안전보건 전달체계 역량 강화

① [민간 협업체계] 업종별 협·단체, 기업 등 예방사업 참여자 다변화

현장의
목소리

“업종별 협·단체와 협업하면 사업장의 거부감도 낮고 특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나 참여할 방법이 제한적”
“외국인 안전관리도 대기업은 이미 다양한 교육, 안전관리 수단을 개발 활용중→ 공유 후 확산 시급”

- **(업종별 협·단체)** 산재예방사업 **쉐 과정***에 참여, 중소 사업장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업종별·전문분야별** 예방사업 전달체계로 활용
 - * 업종 자율 안전보건표준 마련·보급, 예방사업 안내·모집, 자체 컨설팅, 정부사업 평가·피드백 등
- 업종별 협·단체, 기업이 공동으로 **협업 사업** 마련 시 **재정 지원**
- **(대기업)** ESG 안전 경영과 연계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재정지원 등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촉진

② [재해예방기관] 컨설팅 품질 제고 및 평가 강화

현장의
목소리

“컨설턴트의 편차가 너무 크고, 현장을 잘 몰라 컨설팅 내용이 일반적인 안전수칙 정도의 수준임”
“평가등급이 낮거나 평가를 거부해도 제재조치가 없어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교육 개편)** 폴리텍·한기대 등 대학, 업종별 협회 등에도 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 **(평가 강화)** 평가 거부 또는 연속 최저 등급, 미실적 기관 → 지정 취소·업무 정지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③ [안전보건공단] 예방사업 및 인력·조직 개편

현장의
목소리

“급성중독, 화성 화재사고 등 대규모 재해가 반복, 예방사업 효과 제고 必→ 관행화된 사업의 근본 개선”
“新기술·기후변화·외국인·중장년 등 새로운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요구 多”

- **(긴급 점검)** 산재예방사업의 **누수 여부**에 대해 연내 긴급점검 실시, 관행적 사업들이 수요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
- **(업무 재설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미흡·부진사업은 과감하게 폐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신규사업 개발, **조직개편과 연계 추진**

IV. 향후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화재·폭발 예방 및 건설업 안전 인프라 강화		
① 화재·폭발 예방 설비 지원 확대 및 기준 강화		
· 비상구 형광 표시, 외국인 안전 사인 등 디자인 개선 지원	고용부/산업부	'25~
· 화재 확산 방지 보관 시설, 격벽 설치 등 지원	고용부	'25~
· 긴급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 설비 지원	고용부	'24~
· 화재 대응 요령 전파·확산	고용부	'24~
②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등 안전 인프라 강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및 대상 확대	고용부	'25~
· 중소기업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제도 확대 운영	고용부	~'25
· 분리발주 의무 대상 공사 전문가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고용부	'24~
③ 스마트 안전 장비 확산 지원		
· 인체 감지 CCTV 등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고용부	'25~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 비율 상향	고용부	'24~
2.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교육 강화 및 특화 지원		
①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교육 확대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산업안전교육 포함	고용부/법무부	'25~
· E-7 대상(조선업) 산업안전교육 개설	고용부/산업부	'25~
· 안전보건교육(이러닝) 과정 개설 및 이수 지도·권고	고용부/법무부	'25~
· 재외동포 대상 산재보상안내, 기초 안전교육 등 지원 신설	고용부/동포청	'24~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산업안전교육 프로그램 마련·확산	고용부/교육부/산업부	'25~
· 고용허가제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 내실화	고용부	'24~
· 외국인 근로자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 법령 개정	고용부	'24~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교육에 긴급조치·대피 방법 포함	고용부	'24~
· 체류 비자 전환 시 보수 교육 의무화	법무부	'25~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② 찾아가는·체험 중심·업종 특화 산업안전교육		
· 산업단지공단 등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 운영	고용부/산업부	'25~
· 안전체험교육장 주말 개방 및 언어별 체험 과정 운영	고용부	'24~
· 공동훈련센터 등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보건교육 제공	고용부	'24~
· E-9 특화 직무 훈련 시 산업안전교육 확대	고용부	'24~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 체험 교육 등 확대	고용부	'24~
③ 쉽게 이해·활용 가능한 콘텐츠 확산		
·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 보급	고용부	'24~
· 비언어적 콘텐츠 보급 확산	고용부	'24~
· 대사관 등 안전보건정보 정기 배송 제공	고용부	'24~
· 안전보건통역사 자격 제도 도입, 전문강사 양성	고용부	'25~
· 쉬운 안전보건 기초 교육 과정 개설·운영	고용부	'24~
④ 언어 장벽 해소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건설·조선 현장 용어 번역 앱 활용 지원	고용부	'25~
· 안전 역량 레벨업 지원	고용부/산업부	'24~
· 사업장·지역 외국인 안전리더 지정·운영	고용부	'24~
· 업종별 협·단체 협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고용부	'25~
3. 소규모 사업장의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지원 강화		
① 위험요인 발굴-개선-공유 집중 지원으로 위험성평가 효과 제고		
· 근로자 참여 가이드 제작·안내	고용부	'24~
·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업, 컨설팅 등 보완	고용부	'24~
· 고위험자료 최신화 및 공공 데이터로 개방	고용부	'24~
· 컨설팅·지도 시 위험요인 개선 이행 여부 집중 확인	고용부	'24~
· 취약근로자에 위험요인 공유 의무 신설(고시 개정)	고용부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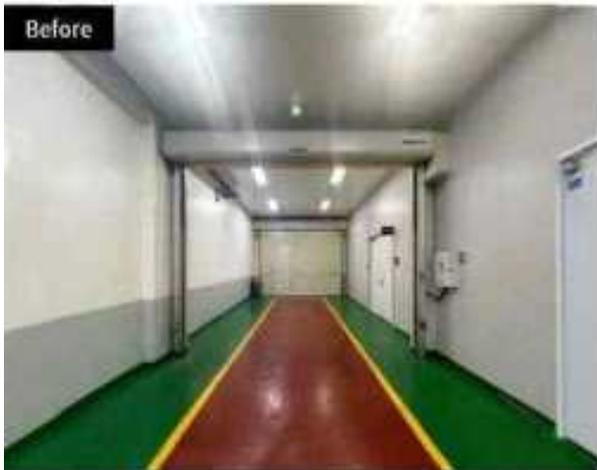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② 소규모 사업장이 더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개선	고용부	'24~
· 위험성평가 단계별 동영상 지원	고용부	'24~
· 사업주·담당자 대상 실습 사례 중심 교육 지원	고용부	'24~
③ 고위험사업장 위험 발굴-개선 중심으로 점검 및 지원		
· 체계 구축 컨설팅 시 현장 근로자 면담 등 강화	고용부	'24~
· 안전보건관리체계취약사업장 컨설팅 연계·지원	고용부	'24~
· 컨설팅 자격 강화 및 저성과 기관 사업 참여 제한	고용부	'24~
· 위험성평가 인정 개편	고용부	'24~
4. 안전 문화 확산 및 인프라 확충		
①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의 안전 의식 제고		
· 4대 금지 캠페인 실시	고용부	'24~
· TV, 라디오 등 미디어 홍보 실시	고용부	'24~
· 우수기업 MOU 등 우수 사례 확산	고용부	'24~
· 지역별 외국인 축제 등과 연계, 지역 특화 캠페인	고용부	'24~
· SNS 채널 등을 통한 홍보	고용부	'24~
②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 산재예방 종합 포털 구축	고용부	'24~
·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 기준 개편	고용부	'25~
· 사업장 안전문화 평가지표 개발·보급	고용부	'25~

붙임 1

작업장 디자인 개선 지원 사례



비상구 시인성 개선(정전 시)



비상대피로 개선



소화기, 응급처지함, 보호구 보관함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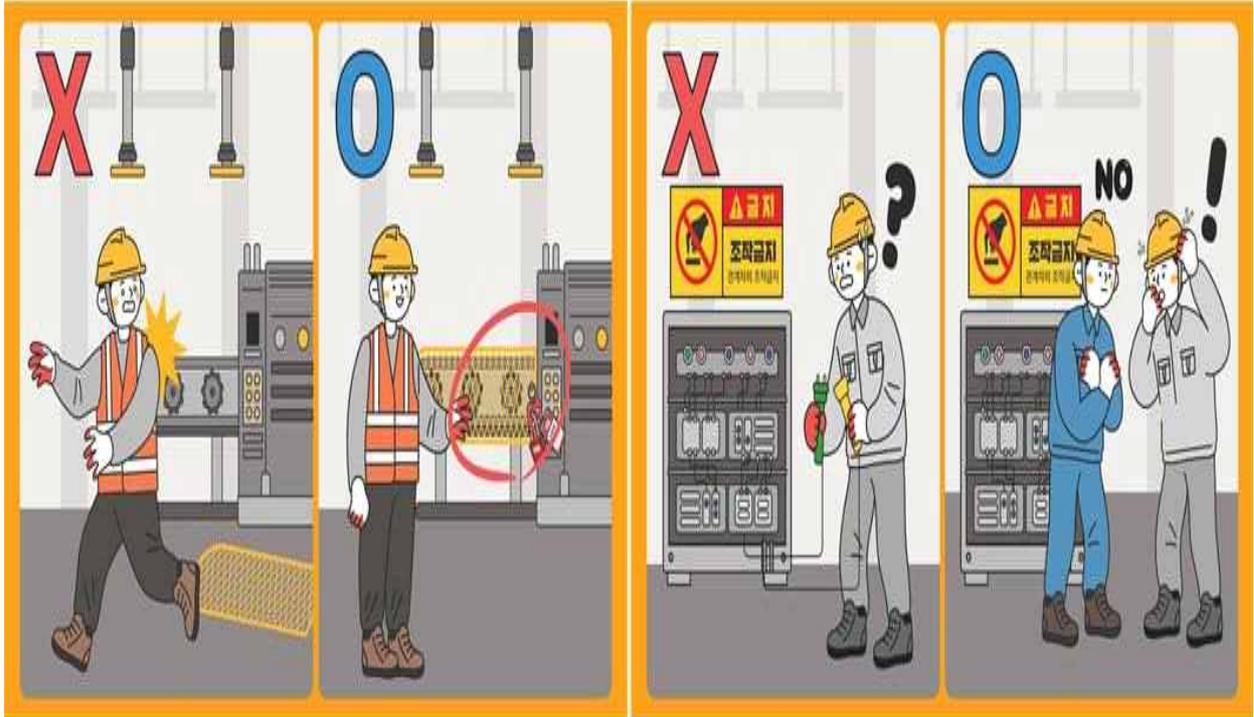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

첫 화면	안전보건 콘텐츠

〈민간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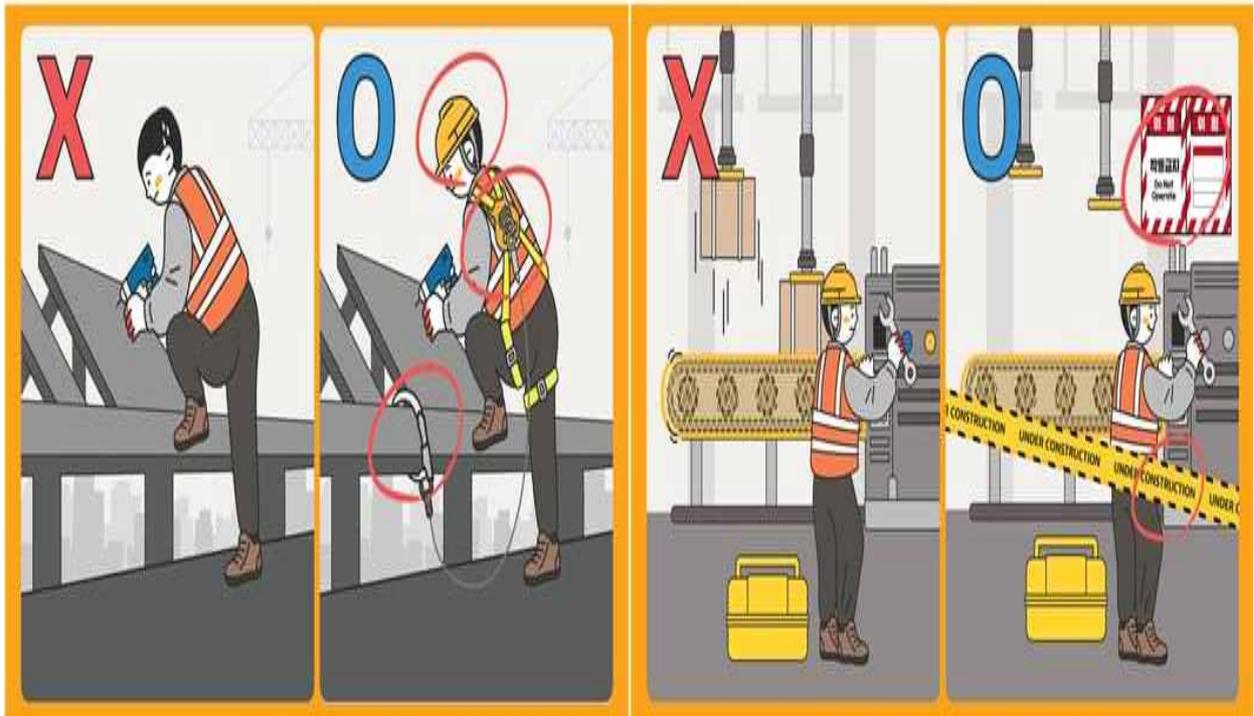
<p>자주 사용하는 문구 중 번역할 문구를 선택합니다.</p> <p>기존에 녹음한 파일이 노출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fety talk) 작업 지시 및 안전 교육 시, 자체 개발한 모바일 번역 어플을 활용하여 소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번역 시스템) 사업장에서의 작성자료를 번역하여, 원본 내용 편집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

4대 금지 캠페인



1. 안전장치 해제 금지

2.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3. 지정된 보호구 착용

4.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